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개정(안)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중 “지역의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지역의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사업)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5. 주민의 장의편의증진을 위한 장의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기 정
<p>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의료의 제공 및 운영을 담당하기 위한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충주의료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주민의 진료와 질병등에 대한 임상연구 의료요원의 훈련을 통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료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7조 (사업) 1~4호 (생략) (신설삽입)</p> <p>5.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p>	<p>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의료의 제공 및 운영을 담당하기 위한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충주의료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주민의 진료와 질병등에 대한 임상연구 의료요원의 훈련을 통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7조 (사업) 1~4호 (현행과 같음)</p> <p>5. 주민의 장의 편의증진을 위한 장의 사업</p> <p>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p>

關聯根據法令(部分抜萃)

<地方公企業法>

第49條(設立) ①서울特別市·直轄市 및 道와 人口 50만이상의 市(이하 이 章에서 “設立團體”라 한다)는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을 效率的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地方公社(이하 “公社”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다만, 人口 50만未滿의 地方自治團體도 特別한 事由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公社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1. 5. 31>

②設立團體가 公社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그 設立·業務 및 運營에 관한 基本的인 事業을 條例로 정하여야 한다.

③設立團體가 公社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2項의 條例에 公社의 定款을 첨부하여 内務部長官(이하 “認可機關”이라 한다)의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1. 5. 31>

[本條新設 80. 1. 4]

<醫療法>

第30條(開設) ①醫療人은 이 法에 의한 醫療機關을 開設하지 아니하고는 醫療業을 行할 수 없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아니면 醫療機關을 開設할 수 없다. 다만, 第1號의 醫療人的 경우에 있어 醫師는 綜合病院·病院 또는 醫院을, 齒科醫師는 齒科病院 또는 齒科醫院을, 韓醫師는, 韓方病院 또는 韓醫院을, 助產師는, 助產所만을 開設할 수 있다.

<改正 75. 12. 31, 86. 5. 10, 87. 11. 28>

1. 醫師, 歯科醫師, 韓醫師 또는 助產師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3. 醫療業을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이하 “醫療法人”이라 한다)

4. 民法 또는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非營利法人

5.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醫院·齒科醫院·韓醫院 또는 助產所를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75. 12. 31, 86. 5. 10>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病院·病院·齒科病院 또는 韓方病院을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境遇에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醫療機關의 開設許可를 하지 아니한다. <改正 75. 12. 31, 86. 5. 10>

1.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地域別所要病床數量를 超過하는 境遇

2.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開設許可의 取消處分이 있는 날로부터 6月 以內에 그 處分을 받은 者가 醴療機關을 開設하고자 하는 境遇

3.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하는 境遇

⑤第5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받은 者가 國內에서 醴療機關을 開設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新設 75. 12. 31>

⑥第3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된 醴療機關이 그 開設場所를 移轉하거나 그 開設에 관한 申告 또는 許可事項중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第3項 내지 第5項과 같다. <改正 87. 11. 28>

⑦助產所를 開設하는 境遇에는 그 開設者는 반드시 指導醫師를 定하여야 한다.